

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8-22
----------	-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1. 제안 이유

상위법령 위배 및 재기재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공공시설 내 매점 면적제한 규정 삭제함(안 제3조 단서)

- 매점 면적제한은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 위배로 삭제

나. 계약기간 3년 규정 삭제함(안 제6조제2항)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르면,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규정되어있어 법령위배

다. 계약자의 의무 규정 삭제함(안 제7조)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0조제3항에 따르면,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여야 하므로 대행관리 규정 삭제

라. 계약의 해지 규정 삭제함(안 제8조)

- 법령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나 사용·수익허가 취소사유 외에 조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 위배로 삭제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의2제1항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5조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0조, 제21조, 제25조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의2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2조제4항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의2제2항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제2항
- 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 의: 기획감사실(규제개혁담당)
- 라. 기타사항
- (1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 - (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 - (3) 입법예고
 - (가) 예고기간: '18. 1. 24.~2. 13.
 - (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 - (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 - (5) 성별영향분석: 해당사항 없음
 - (6) 도내 개정 완료(3): 사천, 진주, 의령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목 “(적용범위)”를 “(다른 조례와의 관계)”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“법령”을 “조례”로 하며,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.

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7조를 삭제한다.

제8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. 매점 및 자동판매기 관리를 게을리한 경우
3.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
4. 공익상 필요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폐지하는 경우
5. 그 밖에 관계법령 및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